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1003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
원 고 A

피 고 [redacted]시장[1)]

변 론 종 결 2020. 7. 14.

판 결 선 고 2020. 9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9. 12. 11. [redacted]시 B 답 3,306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)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를 [redacted]시'로 지정하였으나,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[redacted]시장이 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1. 처분의 경위

가. 피고는 2000. 6. 28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.

나. 피고는 1999. 3. 5. C 소유의 동두천시 D 답 4,245㎡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는데, 위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, 피고는 2009. 7. 6. 그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당해세 등의 압류권자로서 체납액 41,106,270원을 모두 배당받았다.

다. C은 2009. 9. 30.까지 [redacted]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합계 1,558,210원(가산금 제외)을 다시 체납하였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C의 [redacted]시에 대한 체납액 합계는 28,016,670원이다.

라. 원고는 2019. 8. 2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,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([redacted]지방법원 2019카합5435호), 2019. 12. 3.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.

마. 원고는 2019. 12. 5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이 배당 및 충당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.

바. 피고는 2019. 12. 11. 원고에게 부동산임의경매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 지방세가 모두 충당되어 압류 해제의 요건이 되었으나, 배당기일 이후 다시 체납 지방세가 발생하였고 압류의 효력이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지방세에 미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1)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압류하였던 지방세의 체납액이 모두 충당되었으므로, 피고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(2011. 4. 4.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 이러한 압류 해제의 요건이 확정되었다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,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는 압류를 유용할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2)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피고의 압류등기에 우선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 하더라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.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가진 자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,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하고,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공매가 진행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가 한 압류는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,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체납액 충당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

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,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).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,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며(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), 이러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들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세의 체납처분 절차에 준용된다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2009. 7. 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당받기는 하였으나, C이 납기일이 2009. 9. 30.인 [redacted]시에 대한 지방세를 다시 체납하였고,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28,016,67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,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체납액 배당이 배당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2000. 6. 28.한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이후 C이 체납한 지방세에 이러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에 관하여 충당으로 압류가 필요 없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

구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'납부, 충당, 공매의 중지,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'를 들고 있는데, 여기에서의 "기타의 사유"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,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(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두2383 판결 등 참조). 이러한 법리는 "납부, 충당, 공매의 중지, 부과의 취소,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"를 압류의 해제사유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.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. 4. 27.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갑 제14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이 2020. 2. 6. F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([redacted]지방법원 2020머511422호), 그 절차에서 'F은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'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두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더라도 체납액에 충당될 잔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또한 갑 제9, 12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19. 5.경 [redacted]공사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문제로 관련 부서 협의 후 공매진행 예정임을 통보하였고, 2020. 1. 28.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문제로 공매대행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 건물이 철거되어 농지로 회복된 경우 언제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가 진행되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,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체납액에 충당될 잔여가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'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'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별지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징수법

제55조(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, 공장재단,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

제57조(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)

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.

제63조(압류해제의 요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1. 납부, 충당, 공매의 중지, 부과의 취소,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

■ 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98조(체납처분에 관한 「국세징수법」의 준용)

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.

■ 구 국세징수법(2011. 4. 4.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5조(부동산 등의 압류절차)

① 세무서장은 부동산·공장재단·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

제47조(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)

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다.

제53조(압류해제의 요건)

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1. 납부, 충당, 공매의 중지,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. 끝.